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함(제12조제1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